

관리번호

KGS 2026 - 080

해외 제조사 공장등록 가이드



2026. 08.



공 장 심 사 부
Factory Auditing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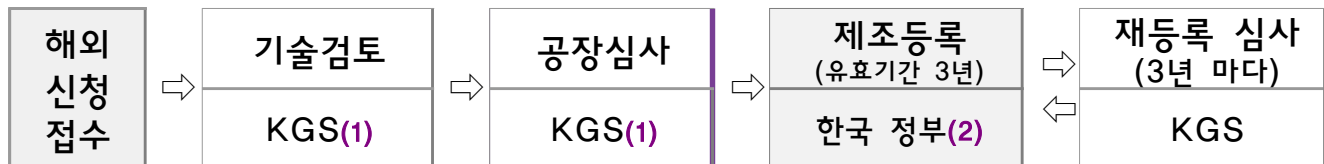
CONTENT

1. 해외 제조사의 공장등록	3
1.1 등록 업무 개요	3
1.2 등록 대상 제품	3
1.3 등록 대상 여부 자체 진단	4
2. 기술검토	5
3. 공장심사	6
3.1 심사 분야 및 심사팀 구성	6
3.2 심사종류	6
3.3 공장심사 비용	7
3.4 공장심사 주요 과정	8
4. 대한민국 정부(MOTIR · MCEE) 제조등록	9
4.1 용기등 제조등록	9
4.2 가스용품 제조등록	10
4.3 수소용품 제조등록	11
4.4 경미한 변경에 따른 제조등록증 변경	12
4.5 제조등록증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12
5. 기타 안내사항	13
5.1 제조등록 대상 제품 세부내용	13
5.2 KGS 홈페이지 이용방법	15
5.3 수입제품 검사 절차	16
6. Q & A	17
[별표 1] 제조등록에 필요한 제품 종류별 상세 분류표	19
[별표 2] 기술검토서 제출 서류	24
[별표 3] 제조등록 면제 대상 제품	34
[별표 4] 변경등록 대상	35
[별표 5] 설계단계검사 대상 제품의 종류별 주관 부서	36

1.1 등록 업무 개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가스 제품을 제조하려는 해외 제조사는 한국 가스안전공사(이하 “KGS”라 한다)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해외 제조사로 제조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조등록 프로세스]



(1) 담당 부서 : 공장심사부 ⇨ 2. ~ 3. 참조

(2) 담당 부서 : 산업통상부(MOTIR), 기후에너지환경부(MCEE) ⇨ 4.1 ~ 4.3 참조

1.2 제조등록 대상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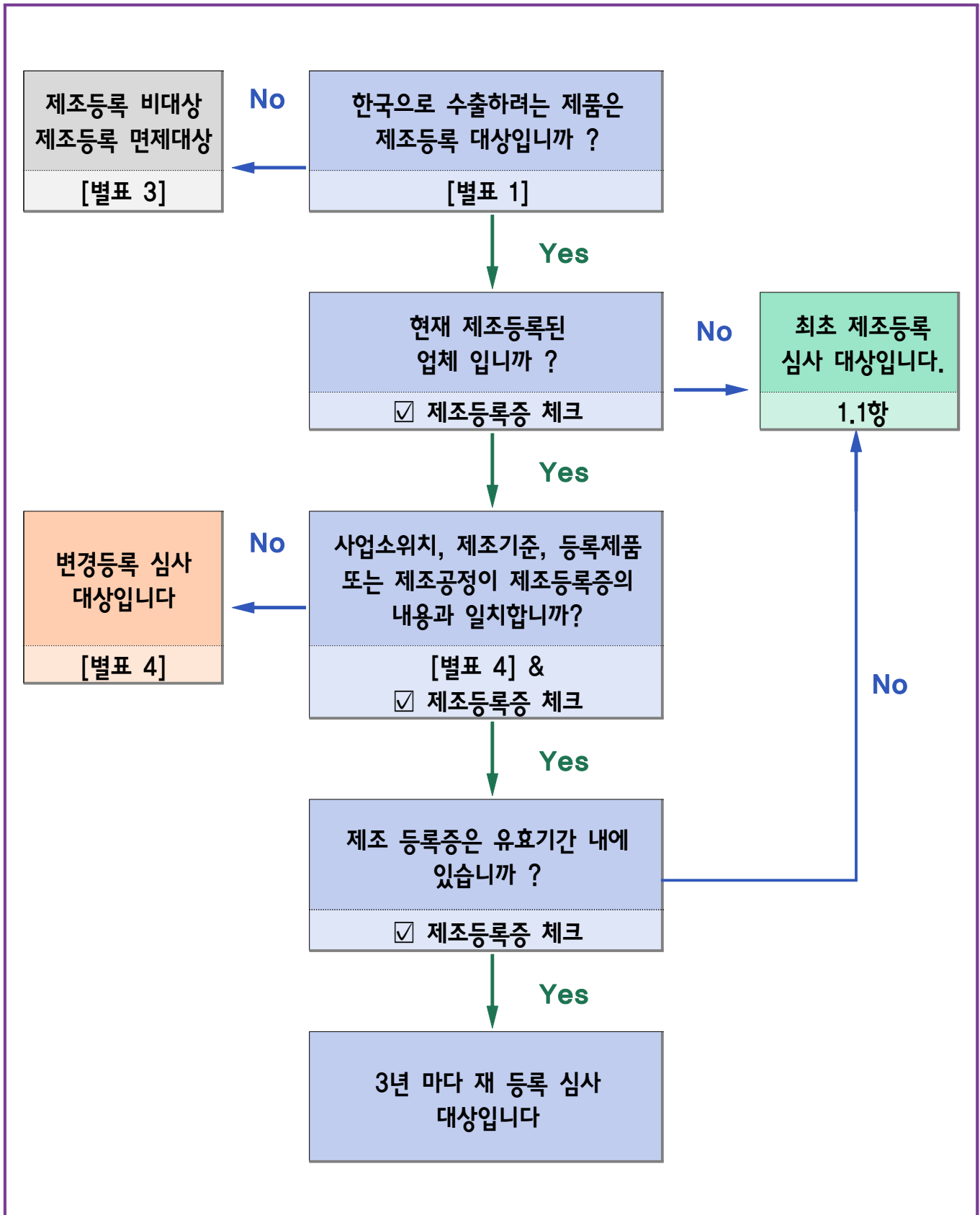
1.2.1 관련근거

제조등록 대상 제품은 26종으로 분류됩니다. 제품별 상세내용은 5.1~5.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별 상세 종류는 [별표 1-1]부터 [별표 1-3]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분	관련근거	제조등록 대상 제품
용기등 [10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1.용기 2.용기부속품 3.저장탱크 4.냉동용특정설비 5.차량에 고정된 탱크 6.압력용기 7.긴급차단장치 8. 독성가스배관용밸브 9.안전밸브 10.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EUV)
가스용품 [13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2.연소기 3.다기능보일러 4. 압력조정기 5.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6. 정압기용 필터 7. 매물형 정압기 8. 호스 9. 배관용 밸브 10. 콕 11. 배관이음관 12.다기능가스안전 계량기 13.로딩암
수소용품 [3종]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수소추출설비 2.수전해설비 3.연료전지(고정형 또는 이동형 연료전지)

1.3 제조등록 대상 여부 자체 진단

Yes/ No Check 흐름도



2.1 담당 부서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신청 연락처)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심사처 공장심사부 우)27738

*담당자: 차장 고승만 (043-750-1605, ksm100@kgs.or.kr)

2.2 기술검토 신청

2.2.1 기술검토에 필요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사항은 [별표 2-1]부터 [별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기술검토 신청서 (6.O Q&A 참조) 1부
- (2) 제조사 일반현황 1부
- (3) 제조·검사 설비의 종류 및 현황 1부
- (4) 등록 대상 제품의 설계도면 및 설명서 1부
- (5) 품질관리 매뉴얼·절차서 1부
- (6) 외주업체 현황 1부 (다만, KGS외주 품질관리 등록 업체는 제외)
- (7) 그 밖에 기술검토에 필요한 서류

2.2.2 신청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바인더 등의 문서철 또는 전자 파일 (HWP, DOC, PDF 파일 등)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기술검토 처리방법

2.3.1 기술검토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인은 KGS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또는 보정하여야 합니다.

2.3.2 2.3.1항의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KGS에서는 2차로 보완 또는 보정 요청을 해야하며,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기간은 7일입니다.

2.3.3. 2.3.2항에 따라 서류를 보완 또는 보정 하지 아니한 때, KGS 기술검토서는 부적합으로 처리됩니다.

2.4 기술검토 비용

2.4.1 기술검토 비용은 [별표 1-1]부터 [별표 1-3]에서 분류한 제조등록 제품 종류별 신청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 신청수량 4종류 이상 : 5,366,000 원
- (2) 신청수량 4종류 미만 : 3,834,000 원

2.4.2 비용은 원화(KRW) 또는 달러(USD)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1 심사 분야 및 심사팀 구성

3.1.1 심사는 ①제조 및 검사 기술기준 ②제조 및 검사 설비 ③품질관리 시스템 분야로 총 3가지 분야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3.1.2 심사팀은 원칙적으로 3명의 심사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원은 심사 범위 등을 고려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3.2 심사 종류

심사의 종류별 업무처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심사 종류		업무 처리 내용
3.2.1 최초등록 심사		- 신규로 제조등록을 위해 필요한 심사 (유효기간 만료 포함) ※ 같은 회사의 공장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의 공장은 등록대상이 됩니다.
3.2.2 변경등록 심사		- 사업소 위치 변경, 등록품목의 변경(추가) 또는 제조기준의 변경(추가), 제조공정 변경을 위한 심사 ※ 변경내용에 대한 기술검토 후 현지 공장심사를 실시하며, 유효기간은 추가 연장없이, 기존 등록증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2.3 재 등록 심사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심사로,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재등록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재등록 심사의 경우 기술검토는 생략됩니다.
3.2.4 부적합 재심사	(1) 중 부적합	- 심사결과가 중부적합일 경우에는 현지 공장에 재방문하여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는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보고서(CAR)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을 이내에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경 부적합	- 심사결과가 경부적합일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 신청자는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보고서(CAR)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부적합 개선 서류와 함께 재심사 신청이 3개월 초과 1년 이내로 확인되면, 3.2.4(1)에 따른 중부적합으로 처리됩니다.

3.3 공장심사 신청 및 비용

- 3.3.1 공장심사 신청서는 6.0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3.2 공장심사 비용은 [표 3.3]에서 정하고 있으며, 심사 종류(최초심사, 재등록심사, 변경심사, 재심사) 및 심사품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 3.3.3 심사품목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비용에 품목 가산비용이 추가되어 적용됩니다. 여기서, 심사품목은 품목 및 제조기준을 말합니다.

【공장심사 비용 산정 예시】

(1) 심사 비용은 기본 심사비 + 제조기준(또는 품목) 추가에 따른 가산비로 산정합니다.
예) 저장탱크와 압력용기를 ASME Sec.VIII Div.1, Div.2로 각각 등록 시,
저장탱크(ASME Sec.VIII Div.1 · 2) + 압력용기(ASME Sec.VIII Div.1 · 2)
= 총 4품목 → 기본 심사비 + 3종류의 가산 비용

(2) (1)의 비용은 항공료 및 체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며, INOVICE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표 3.3 공장심사 비용]

(‘26.8월 기준)

구 분		기본비용
최초등록 심사 (3.2.1)	용기,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압력용기, 냉동용 특정설비	14,490,000원
	용기부속품, 긴급차단장치, 안전밸브, 독성가스 배관용밸브, 가스용품, 수소용품	12,310,000원
변경등록 심사 (3.2.2)	전 품목	3,610,000원
재 등록심사 (3.2.3)	용기,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압력용기, 냉동용 특정설비	12,310,000원
	용기부속품, 긴급차단장치, 안전밸브, 독성가스 배관용밸브, 가스용품, 수소용품	10,350,000원
재심사 (3.2.4)	현장심사 [(1)중부적합]	6,860,000원
	서류심사 [(2)경부적합]	2,070,000원
품목가산비용	품목 또는 제조기준 당	1,440,000원

3.4 공장심사 주요 과정

3.4.1 공장심사 진행

시작 회의	◦ 소개 ▶ 심사 품목 · 기준 등 확인 ▶ 일정 확인 ▶ 판정기준 안내 ▶ 질의응답 등
Factory Tour	◦ 본격적인 심사 전 공장의 전반적인 Flow 확인 원자재 입고관리 · 제조 및 검사공정 · 출고 등
현지 공장심사	◦ 일정표에 따라 분야별 현지 심사 실시 ❶ 제조기준 : 재료 · 설계 · 제조 · 시험 등에 대해 요구사항 및 절차 확인 ❷ 제조 및 검사설비 : 설비 보유 여부 및 능력, 교정 상태, 관리 상태 확인 ❸ 품질시스템 :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필요한 조치 실행 등 확인
중간 회의	◦ 확인된 부적합사항 · 권고사항을 알려주고 반증 자료를 제시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
종료 회의	◦ 심사대상 · 등록기준 등 재확인, 발견사항 요약 및 설명, 심사 결과 안내 ◦ 심사 결과에 따른 향후 진행절차 설명

3.4.2 공장 심사 결과 판정

■ 심사결과는 마지막 날 알려드리며, 결과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 합]	◦ 대한민국 정부에 제조등록을 할 수 있음
[경부적합]	◦ KGS관련규정, 신청제조규격(제조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적 사항이, 현재 경미하나 향후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문서 재심사 필요 (부적합 후 3개월 내에 조치되지 않는 경우 현장재심사로 전환, 1년 초과 시 기술검토부터 재진행)
[중부적합]	◦ KGS관련규정, 신청제조규격(제조기준) 요구사항의 누락 및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 또는 다수의 경부적합 발생으로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현장 재심사 필요 (부적합 후 1년 내 조치되지 않는 경우 기술검토부터 재진행)

4.1 용기등 제조등록

4.1.1 담당 부서 (서류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우)30118

*담당자: 우유리 주무관 (044-203-5182, superb45@korea.kr)

4.1.2 심사종류별 제조등록 신청서류

4.1.2.1 최초등록 · 변경등록

- (1) 제조등록 신청서 또는 제조 변경등록 신청서
- (2) 회사 브로셔 또는 카탈로그
- (3) 공장심사 결과서
- (4) 기술검토 결과서
- (5) 기존 등록증 원본 (변경등록 시)
- (6) 수입인지
 - 25,000 KRW (최초등록) / 15,000 KRW (변경등록)
 - <https://www.e-revenuestamp.or.kr/>
 - 한국인만 구매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가능

4.1.2.2 재등록

- (1) 제조등록 신청서
- (2) 회사 브로셔 또는 카탈로그
- (3) 공장심사 결과서
- (4) 기존 등록증 원본
- (5) 수입인지
 - 25,000 KRW
 - <https://www.e-revenuestamp.or.kr/>
 - 한국인만 구매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가능

4.2 가스용품 제조등록

4.2.1 담당 부서 (서류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우)30118

*담당자: 우유리 주무관 (044-203-5182, superb45@korea.kr)

4.2.2 심사종류별 제조등록 신청서류

4.2.2.1 최초등록 · 변경등록

- (1)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신청서 또는 외국가스용품 제조 변경등록 신청서
- (2) 회사 브로셔 또는 카탈로그
- (3) 공장심사 결과서
- (4) 기술검토 결과서
- (5) 기존 등록증 원본 (변경등록 시)
- (6) 수입인지

- 30,000 KRW (최초등록) / 15,000 KRW (변경등록)
- <https://www.e-revenuestamp.or.kr/>
- 한국인만 구매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가능

4.2.2.2 재등록

- (1) 외국가스용품 제조 재등록 신청서
- (2) 회사 브로셔 또는 카탈로그
- (3) 공장심사 결과서
- (4) 기존 등록증 원본
- (5) 수입인지

- 30,000 KRW
- <https://www.e-revenuestamp.or.kr/>
- 한국인만 구매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가능

4.3 수소용품 제조등록

4.3.1 담당 부서 (서류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우)30118

*담당자: 강은주 주무관 (044-203-3990, ejkang70@korea.kr)

4.3.2 심사종류별 제조등록 신청서류

4.3.2.1 최초등록 · 변경등록

- (1)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신청서 또는 외국수소용품 제조 변경등록 신청서
- (2) 회사 브로셔 또는 카탈로그
- (3) 공장심사 결과서
- (4) 기술검토 결과서
- (5) 기존 등록증 원본 (변경등록 시)
- (6) 수입인지

- 25,000 KRW (최초등록) / 15,000 KRW (변경등록)
- <https://www.e-revenuestamp.or.kr/>
- 한국인만 구매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가능

4.1.2.2 재등록

- (1) 외국수소용품 제조 재등록 신청서
- (2) 회사 브로셔 또는 카탈로그
- (3) 공장심사 결과서
- (4) 기존 등록증 원본
- (5) 수입인지

- 25,000 KRW
- <https://www.e-revenuestamp.or.kr/>
- 한국인만 구매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가능

4.4 경미한 변경에 따른 제조등록증 변경

4.4.1 단순 변경(회사명, 대표자 성명)의 경우 다음의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4.2 담당 부서 (서류 제출)

〈 용기 등, 가스용품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우)30118

*담당자: 우유리 주무관 (044-203-5182, superb45@korea.kr)

〈 수소용품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우)30118

*담당자: 강은주 주무관 (044-203-3990, ejkang70@korea.kr)

4.4.3 제조등록 신청서류

(1) 변경등록 신청서 [용기등]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 [가스용품]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 [수소용품]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회사의 공문 등)

(3) 수입인지 [용기 등] : 15,000 KRW, [가스용품], [수소용품] : 해당없음

<https://www.e-revenuestamp.or.kr/> (한국인만 구매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가능)

(4) 기존 등록증 원본

4.5 제조등록증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4.5.1 제조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 등 서류 작성은 수기 작성이 아닌 PC 등으로 전자 작성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5.2 제조등록증 신청 서류를 해외에서 대한민국 정부(산업통상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처의 주소를 영문과 국문 모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5.1 제조등록 대상 제품 세부내용

5.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등록 대상 제품(용기등)

5.1.1.1 “고압가스”란 기체상태의 가스가 압축된 상태인 경우 상용의 온도 또는 35℃에서 압력이 1.0MPa 이상인 가스 또는 가스가 액화된 경우 상용의 온도 또는 35℃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인 가스를 말합니다.

※(참고) 정확한 “고압가스”의 정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1.1.2 “용기”란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용기의 대표적인 종류는 제조방법에 따라 이음매없는용기, 용접용기, 납땜·접합용기, 복합재료용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적 300mL 미만의 용기, 에어로졸 용기는 공장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1.3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합니다.

5.1.1.4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합니다.

5.1.1.5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합니다.

5.1.1.6 “압력용기”란 그 압력용기의 설계압력이 고압가스 이상인 것으로 지상에 고정 설치된 용기를 말합니다. 압력용기의 종류로는 열교환기, 드럼, 타워, 반응기 등이 있습니다.

5.1.1.7 “독성가스 배관용밸브”란 독성가스가 흐르는 배관에 설치되는 볼밸브, 글로브밸브,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및 콕을 말한다.

5.1.1.8 “냉동용특정설비”란 냉동능력이 3톤 이상인 것으로 냉동설비를 구성하는 압축기·응축기 또는 증발기와 압력용기를 말합니다.

5.1.1.9 “긴급차단장치”란 가스설비의 이상 상태가 발생할 때에 해당 설비를 신속히 차단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5.1.1.10 “안전밸브”란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자동으로 가스를 배출하여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로, 고압가스용 스프링 직동식 안전밸브를 말합니다.

5.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제조등록 대상 제품(가스용품)

5.1.2.1 “연소기”란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연소장치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kW(20만 kcal/h)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튀김기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 오븐 등이 있습니다.

5.1.2.2 “강제혼합식 가스버너”란 송풍기로 연소용 공기를 강제적으로 공급하는 버너를 말합니다. 다만, 가스버너가 있는 연소장치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kW(20만 kcal/h)이하인 연소기에 부착된 강제혼합식 가스버너는 제외됩니다.

5.1.2.3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란 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계량기를 말합니다.

5.1.2.4 “다기능보일러”란 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가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kW(20만 kcal/h)이하인 보일러를 말합니다.

5.1.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등록 대상 제품(수소용품)

5.1.3.1 “연료전지”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연료 소비량이 232.6kW(20만 kcal/h)이하인 제품(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고정형 연료전지와 이동형 연료전지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1.3.1.1 “고정형 연료전지”란 연료소비량이 232.6kW(20만 kcal/h)이하인 고정형 연료전지와 그 부대설비를 말합니다.

5.1.3.1.2 “이동형 연료전지”란 연료전지로부터 생산된 전기와 열을 모빌리티 등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종류는 모빌리티 용도에 따라 지게차용, 드론용, 건설기계용, 노면전차용, 항공기용, 선박용 등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5.1.3.2 “수전해설비”란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1.3.3 “수소추출설비”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를 말한다.

5.2 KGS 홈페이지 이용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국문) : www.kgs.or.kr/kgs/afcd/view.do
- 공장심사 관련 문서 다운로드 : 주요사업 ▶ 공장심사 ▶ 관련문서 다운로드

KGS_KOR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안전교육원 | 가스안전연구원 | 수소안전기술원 |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 수출기업지원서비스 | 광역본부 · 본부 · 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고객센터 | 가스와생활 | 정보공개 | 공사소개 | ESG경영 | **주요사업** | 알림마당

주요사업

가스시설검사 · 고압가스시설검사 · 액화석유가스시설검사 · 도시가스시설검사 · 가스안전영향평가 · SMS	가스시설진단 · 안전진단·컨설팅 · 유해화학물질검사·진단	가스제품검사 · 용기·특정설비검사 · 가스용품검사 · 공장심사 · 외주품질관리등록 · 가스품질검사 · 가스용품·의뢰시험	시설제품인증 · 성능인증 · KGS제품인증 · 방호인증 · KS인증 · 국내방폭인증 · 해외방폭인증 · 표준물질생산	ISO·온실가스 · ISO인증신청 · ISO인증교육 · 온실가스검정 · KGS-QA
해외사업지원 · 해외수출지원 · 해외사무소운영	산업가스안전 · 중화 및 전가스처리 · 산업가스안전기기시험 · 전자기적합성(EMC)시험 · 산업가스안전교육	가스안전연구 · 연구개발 · 표준개발협력기관	가스안전교육 · 전문교육 · 특별교육 · 양성교육 · 위탁교육	가스안전홍보 · 언론홍보 · SNS홍보 · 행사홍보 · 가스안전대상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영문) : <https://www.kgs.or.kr/eng/iaa/view.do>
- 공장심사 관련 문서 다운로드

KGS_ENG



KGS Services ▶ Overseas manufacturer(factory) registration ▶ Download related documents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 **KGS Services** | Safety Manage | About KGS | Businesses | News&Data

KGS Services

Overseas manufacturer(factory) registration	Explosive-proof Equipment Certifications	Gas Products Certifications	Systems Certifications
Privacy Policy			

5.3 수입제품 유통절차

외국에서 제조된 가스 제품을 한국에서 유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기술검토 공장심사 전 서류심사	• [기술검토] : 공장심사 전 서류심사 단계 - 본 가이드의 1.1항의 제조등록 프로세스에 따라 2. 기술검토에서 적합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심사부
▼		
 공장심사 현지공장심사	• [공장심사] : 공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단계 - 본 가이드의 1.1항의 제조등록 프로세스에 따라 3. 공장심사에서 적합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심사부
▼		
 등록증발급 대한민국 정부 신청	• [제조등록] : 대한민국정부에서 제조사에게 제품수출 자격 부여 단계 - 본 가이드의 1.1항의 제조등록 프로세스에 따라 4.대한민국 정부 (MOTIR · MCEE)로 부터 제조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MOTIR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CEE :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산업통상부 (MOTIR) 기후에너지 환경부 (MCEE)
▼		
 설계단계검사 모델, 타입 별 상세검사	• [설계단계검사] : 제조한 제품에 대한 모델 또는 형식별 상세 검사단계 -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즉, Prototype 또는 Type Approval 검사에 해당합니다. - 설계단계 대상 제품 및 KGS 담당부서는 본 가이드의 [별표 5]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KGS 본사 또는 해당 지역
▼		
 생산단계검사 (수입검사) 개별품목에 대한검사	• [생산단계검사]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전수 또는 샘플링 방식으로 생산 단위별 검사 단계 - 설계단계검사에서 합격(또는 면제)된 모델 또는 형식의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 단위별 검사후 합격한 경우 제품마다 유통할 수 있는 "KC"표시를 합니다. - Production Test와 유사한 검사체계로서, KGS 지역(본부 · 지사)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KGS 해당 지역

Q) 공장심사는 어디에 안내되어 있나요?

A) 공장심사 제도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국문) : www.kgs.or.kr/kgs/afcd/view.do
- 공장심사 관련 문서 다운로드 : 주요사업 ▶ 공장심사 ▶ 관련문서 다운로드

KGS_KOR



Q) 공장심사 관련 신청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기술검토, 공장심사 신청서 등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국문) : www.kgs.or.kr/kgs/afcd/view.do
- 공장심사 관련 문서 다운로드 : 주요사업 ▶ 공장심사 ▶ 관련문서 다운로드

KGS_KOR



Q) KGS CODE가 무엇인가요?

A) KGS CODE는 한국에서 가스 제품을 제조, 검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품목별
상세 제조·검사기준입니다.

Q) KGS CODE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KGS CODE는 KGS CODE 검색 -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에 접속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문 CODE는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KGScode_KOR



Q) 모든 가스제품은 제조등록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제조등록 대상 제품은 본 가이드의 [별표1-1]에서 [별표1-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별표 3]의 제조등록 면제 대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제조등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Q) 외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모두 수입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대한 민국 정부로부터 발급한 제조등록증에서 허용된 범위 내의 제품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Q) 현재 제조등록된 업소가 궁금해요.

A) 현재 제조등록된 업소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국문) : www.kgs.or.kr/kgs/afcd/view.do
- 공장심사 관련 문서 다운로드 : 주요사업 ▶ 공장심사 ▶ 관련문서 다운로드

KGS_KOR



Q) 제조품목과 제조기준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제조품목, 제조기준 변경 등은 변경등록 심사 대상이 되며, 기술검토와 변경심사 후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대상은 본 가이드의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공장등록 후 가스제품을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본 가이드의 5.3 수입제품 유통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No.	용기등 제조등록 세부 내용 Registration Information for Cylinders etc. According to KGS code				
	종류 Classification	상세 분류 sub-Classification	제조등록 제품 종류 Type for registration		KGS code
1	용기 Cylinders	용접용기 Welded Cylinders	고압가스용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Welded Cylinders for High-Pressure Gases (LPG)		AC211
2			초저온가스용 용기 Cryogenic Gas Cylinders		AC213
3			아세틸렌용 Welded Cylinders for Acetylene		AC214
4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Welded Cylinders for LP Gas Cabinet Heaters		AC215
5			재충전금지용기 Non-refillable Cylinders for High-pressure Gases		AC216
6			이동식부탄연소기용 Welded Cylinders for Portable Gas Stoves		AC312
7			그 밖에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Other Welded Cylinders for High-Pressure Gases		AC211
8		이음매없는용기 Seamless Cylinders	강제 Steel Seamless Cylinder	스피닝타입 Spinning Type	AC212
9				빌렛타입 Billet Type	
10				딥드로잉타입 Deep-Drawing Type	
11			알루미늄합금제 Aluminum Seamless Cylinder	스피닝타입 Spinning Type	
12				빌렛타입 Billet Type	
13				딥드로잉타입 Deep-Drawing Type	
14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에어졸용 제외) Soldered or Jointed Cylinders (Excluding aerosol)	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1L이하 1회용) Soldered or Jointed Cylinders for High-Pressure Gases (internal volume of 1L or less)		AC311
15			자동차냉매용 접합용기(1L 미만) Jointed Cylinders for Vehicle refrigerant (internal volume of less than 1L)		AC313
16		복합재료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제외) Composite Cylinders (Excluding LPG use)	고압가스용 알루미늄합금라이너 복합재료용기 (내용적 150 L 이하) Aluminum Alloy Liner Composite Cylinders for High-pressure Gases (internal volume of 150L or less)		AC411
17			고압가스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내용적 150 L 이하) Nomnetal Liner Composite Cylinders for High-pressure Gases (internal volume of 150L or less)		AC418

구 분 No.	용기등 제조등록 세부 내용 Registration Information for Cylinders etc. According to KGS code			
	종류 Classification	상세 분류 sub-Classification	제조등록 제품 종류 Type for registration	KGS code
18	용기 Cylinders	복합재료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제외) Composite Cylinders (Excluding LPG use)	압축수소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내용적 150 L 초과 450 L이하) Nonmetal Liner Composite Cylinders for Transportation of Compressed Hydrogen (internal volume of more than 150L and up to 450L)	AC419
19			이동수단용 압축수소 복합재료 용기 (내용적 450L이하) Compressed Hydrogen composite Cylinders for Vehicles (internal volume of 450L or less)	AC421
20		복합재료용기 (액화석유가스용) Composite Cylinders (for LPG)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내용적 450 L 이하) Composite Cylinders for LPG (internal volume of 450L or less)	AC413
21		기타 용기 (자동차용) other types of cylinders (for automotive use)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용기 Cylinders for LPG vehicles	AC219
22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Cylinders for CNG vehicles	AC412
23			액화천연가스 자동차용 용기 Cylinders for LNG vehicles	AC416
24			연료전지자동차용 압축수소 용기 Compressed Hydrogen Gas Cylinders for Fuel Cell Vehicles	AC417
25		용기부속품 Cylinder Accessories	고압가스용 용기 부속품 Cylinder Accessories for High-pressure Gases	AA311
26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LP Gas Cylinder Valves with Cut-off Function	AA312
27			과류차단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LP Gas Cylinder Valves with Excessive flow Cut-off Function	AA313
28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기밸브 Cylinder Valves for LP Gas Cabinet Heaters	AA314
2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Cylinder Valves for LP Gas Cabinet Heaters	AA315
30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 용기밸브 Cylinder Valves for LPG vehicles	AA320
31	특정설비 Specified Equipment	저장탱크 Storage Tanks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Storage Tanks for High-pressure Gases	AC111
32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Small LP Gas storage tank	AC114
33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LNG storage tank	AC115

구 분 No.	용기등 제조등록 세부 내용 Registration Information for Cylinders etc. According to KGS code			
	종류 Classification	상세 분류 sub-Classification	제조등록 제품 종류 Type for registration	KGS code
34	특정설비 Specified Equipment	냉동용특정설비 (일체형 제외) Specified Equipment for Refrigeration	냉동용 특정설비(압축기) Specified Equipment for Refrigeration (Compressors)	AC112
35			냉동용 특정설비(응축기, 증발기, 압력용기) Specified Equipment for Refrigeration (Condensers, Vaporizers, Pressure Vessels)	
36		차량에 고정된 탱크 High-Pressure Gas Tanks Fixed on Vehicles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High-Pressure Gas Tanks Fixed on Vehicles	AC113
37		압력용기 Pressure Vessels	고압가스용 압력용기 (드럼, 타워, 반응기, 기타) Pressure Vessels (Drum, Tower, Reactors, Others)	AC111
38			고압가스용 압력용기(열교환기) Pressure Vessels (Heat Exchanger)	
39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내용적 500 L 이하) Composite Pressure Vessels for compressed Hydrogen Gases (internal volume of 500L or less)	AC118
40		긴급차단장치 Emergency Cut-off Devices	고압가스용 긴급차단 장치 Emergency Cut-off Devices for High-pressure Gases	AA317
41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Valves for Toxic Gas Pipes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Valves for Toxic Gas Pipes	AA318
42		안전밸브 Safety Valves	고압가스용 안전밸브 Safety Valves for High-pressure Gases	AA319
43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EUV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Extreme Ultra Violet Lithography Machine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	AA916

별 표 1-2 [가스용품] 제조등록에 필요한 제품 종류별 상세 분류표

가스용품 제조등록 세부 내용								
Registration Information for Gas Appliances, According to KGS code								
종류I Classification I : 연소기기				종류II Classification II : 안전기기				
No.	상세 분류 sub-Classification	KGS code		No.	상세 분류 sub-Classification	KGS code		
		code no.	제조등록 제품 종류 Type for registration			code no.	제조등록 제품 종류 Type for registration	
1	강제혼합식가스버너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23	압력조정기	LPG	AA434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2	가스레인지	AB331	가스레인지	24			AA435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압력조정기	
3	가스오븐	AB333	가스오븐	25			AA436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압력조정기	
4	가스그릴	AB335	가스그릴	26			AA437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5	가스오븐레인지	AB332	가스오븐레인지	27			AA438 액화석유가스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6	가스밥솥	AB334	가스밥솥	28			LNG	AA431 도시가스 압력조정기
7	가스온수기, 온수보일러, 난방기, 냉방기, 의류건조기	AB135	가스온수기	29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AA632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8		AB131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30		AA633	가스누출자동차단기	
9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	31	정압기용가스필터	AA433	정압기용 필터	
10		AB133	자연배기식 및 자연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32	매몰형정압기	AA432	매몰형 정압기	
11		AB231	가스난방기	33	호스	고압 호스	AA531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12		AB134	가스냉난방기	34			AA532 자동차용 고압고무호스	
13		AB232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35			AA53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비금속호스	
14		AB933	가스의류건조기	36			저압 호스	AA534 가스용 염화비닐호스
15		AB337	가스용 주물연소기	37				AA535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16		AB338	가스사용 업무용대형연소기	38				AA536 가스용 고무호스
17	이동식부탄연소기	AB336	이동식부탄연소기	39	AA537 가스용 수지호스			
18	이동식프로판연소기	AB339	부탄가스용 연소기	40	배관용 밸브	AA331 그 밖의 배관용 밸브		
19	부탄연소기 및 숯불구이점화용 연소기	AB341	이동식프로판연소기	41		AA332 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		
20	AB932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42	AA333 가스용 폴리에틸렌밸브				
21	그밖의연소기	AB935	그 밖의 연소기	43		AA335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중 글로벌밸브		
	<삭 제>			44		AA336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중 황동볼밸브		
22	다기능보일러	AB136	다기능보일러	45		AA338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		
				46	가스용 콕	AA334 가스용 콕		
				47		AA337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48		AA339 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49		AA340 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51	배관이음관	AA231 가스용 전기절연이음관		
				51		AA232 가스용 전기용착폴리에틸렌이음관		
				52		AA233 가스용 이형질이음관		
				53		AA234 가스용 신속 커플러		
				54		AA235 액화석유가스용 안전 커플링		
				55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AA63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56	로딩암	AA236 가스용 로딩암		



- 9Man•Day
 - 6Man•Day
 - 4Man•Day : 최초심사기준

별 표 1-3 [수소용품] 제조등록에 필요한 제품 종류별 상세 분류표

구분 No.	수소용품 제조등록 세부 내용 Registration Information for Hydrogen Appliances. According to KGS code		KGS code
	종류 Classification	제조등록 제품 종류 Type for registration	
1	수소추출설비 Hydrogen Generators Using Fuel Processing Technologies		AH171
2	수전해설비 Water Electrolysis Hydrogen Generator		AH271
3	고정형 연료전지 Fuel Cells(Fixed)		AH371
4	이동형 연료전지 Mobile Gas Fuel Cells Portable Fuel Cells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Mobile Gas Fuel Cells(for Forklift)	AH372
5		이동형 연료전지(드론용) Portable Fuel(unmanned aerial vehicle)	AH373
6		이동형 연료전지(건설기계용) Portable Fuel Cells(Construction Machinery)	AH374
7		이동형 연료전지(노면전차용) Portable Fuel Cells applied to Trams	AH375
8		이동형 연료전지(항공기용) Portable Fuel Cells applied to Aircraft	AH376
9		이동형 연료전지(선박용) Portable Fuel Cells applied to ships	AH377



수소용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Part) 중, [용기 등]에 해당하는 용기, 압력용기, 안전밸브 등이 포함될 경우 그 부품은 공장등록을 완료한 업체에서 제조되어 해당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함

1. 일반현황

1.1. **제조사 일반현황** :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생산 제품 내역서, 회사소개 자료

1.2. **제조사 등록현황** : 제조 규격 및 품질시스템 관련 인증서 사본

1.3. **신청품목 현황 및 제조공정도**

- (1) 본 가이드의 [별표 1-1]에 따른 제조등록 제품 종류
- (2) 제품 종류별 제조공정도

1.4. **외주업소 현황** : 성형(Casting, Forging, Rolling, Bending 등), 기계시험, 열처리, 비파괴 검사 공정을 외주업소에서 수행하는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현황 제출

<외주업소 현황 작성 예시>

외주공정	업체명	업체담당자 e-mail	주소	제조사로부터의 거리(Km)	비 고
성 형	AA Forging	AA@aa.com	1234 aaa St.	11	경판
	BB Rolling	BB@bb.com	5678 bbb St.	22	동판
	CC Casting	CC@cast.com	9999 ccc St.	33	주조
	DD Bending	DD@dd.com	3838 ddd St.	44	동판 등
기계시험	AA Mechanical Testing	AA@aa.com	1111 AA St.	44	인장, 굽힘, 충격
열 처 리	BB Heat-Treatme nt Co.	BB@bb.com	2222 BB St.	55	노, 국부
비파괴 검사	CC NDE Co.	CC@cc.com	3333 CC St.	66	RT, UT, MT, PT 등



제조등록 제품 종류중 **용기(Cylinders)**는 일반적으로 외주 공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상세한 내용은 KGS 공장심사부 기술검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제조 및 검사설비 현황

- 2.1 제조에 필요 설비 목록은 본 가이드의 [별표 1-1]에 따른 제조등록 제품종류별 KGS CODE의
2. 제조시설 기준을 참조하여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제조설비 작성 예시>

번호	설비구분	설비명	규격(Spec.)	수량	비고*
(1)	단조설비 또는 성형설비	Forming Press Pipe Cutting Machine	30Ton Max ϕ 500	3 2	
(2)	아래부분접합설비	Pre-Heating Machine Spinning Machine	1300 $\pm$ 50 $^{\circ}$ C Max ϕ 500 * L 1300mm	2 2	
(3)	열처리로 및 자동온도기록장치	Quenching Furnace Tempering Furnace Temp. Recorder	1300 $^{\circ}$, 6000*2000*4000 500 $^{\circ}$ C, 6000*2000*4000 Thermocouple * 12	1 1 1	
(4)	세척설비	Acid Cleaning Booth	2000*1000*2000	2	
(5)	쇼트브라스팅 및 도장설비	Shot Blasting Room Painting Room	5000*2000*7000 5000*2000*7000	1 1	외주업체 업체명:AAA
(6)	밸브 탈, 부착기	Valve Assembly Line	Torque Meter(0~300N·m)	5	
(7)	용기내부건조설비 및 진공흡입설비	Drying System Vacuum Pump	- 500W, 70Torr	1 1	
(8)	그 밖에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Stamping Machine Crane	- 50Ton	1 3	

<검사설비 작성 예시>

번호	설비구분	설비명	규격(Spec.)	수량	비고*
(1)	내압시험설비	Hydrostatic Testing Machine	Max 50MPa	8	
(2)	기밀시험설비	Air-Tightness Testing Machine	Max 30MPa	8	
(3)	초음파두께측정기 나사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기타 측정기류	Ultrasonic Thickness Meter Plug & Ring Gauge Calipers Height Gauge Coating Thickness Gauge	0~50(0.01)mm M28 * 1.5등 0~300(0.01)mm 등 0~700(0.01)mm 0~1250(0.1) μ m	4 다수 다수 1 1	
(4)	저울	Electronic Weight	0~200(0.01)kg	1	
(5)	용기부속품성능시험기	-	-	-	해당없음
(6)	용기전도대	-	-	-	해당없음
(7)	내부조명설비	Internal Inspection Light	-	5	
(8)	만능재료시험기	Universal Testing Machine	1000kN	3	
(9)	밸브 토크 측정기	Torque Meter	0~300(1)N·m	4	
(10)	표준압력계	Standard Pressure Gauge	0~50(0.1)MPa 0~30(0.1)MPa	5 5	
(11)	표준온도계	Standard Temperature Meter	-30~100(0.1) $^{\circ}$ C	5	
(12)	그 밖에 용기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Flattening Testing Machine Impact Testing Machine NDE Cycling Testing Machine Burst Testing Machine	- ASTM E23 UT, MT, PT Max 50MPa Max 100MPa	1 1 각 1 1 1	

* 해당되지 않거나 외주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비고란에 그 내역을 표시

3. 품질관리매뉴얼 및 절차서

3.1. 품질관리 매뉴얼은 (1)문서 및 기록관리(Documented information) (2)제조자책임(Organization responsibilities) (3)인원 및 장비 관리(People, Monitoring and Measuring resources) (4)제품 요구사항(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s) (5)설계및개발(Design and development of products and services) (6)구매관리(Control of externally provided processes, products and services) (7) 생산관리 (Production and service provision) (8) 검사관리(provided inspection processes) (9)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 (10)개선(Improvement)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3.2 3.1항에 따라 품질관리 절차서에서는 아래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1) 재료 관리(입고검사 등)
- (2) 용접
- (3) 성형(경판, 동판 등)
- (4) 비파괴검사
- (5) 열처리
- (6) 압력시험
- (7) 측정기류의 교정
- (8)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표시사항(명판도면 등)
- (9) 그 밖의 제조 규격에서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 절차

4. 제품 설계의 적합성 확인용 강도계산서(Strength Calculation) 및 도면

5. 적용한 제조기준에 따라 해당 공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Type Approval, Prototype 인증서 등)

6. 제조사 대표가 서명한 기술검토 신청서

7. 대한민국 정부 제조등록증 (보유하고 있는 경우)

8. 그 밖에 기술검토 참고 자료

1. 일반현황

1.1. **제조사 일반현황** :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생산 제품 내역서, 회사소개 자료

1.2. **제조사 등록현황** : 제조 규격 및 품질시스템 관련 인증서 사본

1.3. **신청 품목 현황 및 제품 도면**

- (1) 본 가이드의 [별표 1-2]에 따른 제조등록 제품 종류
- (2) 제품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제품 도면

1.4 **시설 배치도**

- (1) 사업장 위치도
- (2) 제조설비 배치도
- (3) 검사설비 배치도

1.5 **제조공정도**

1.6 **외주업소 현황** : 핵심 부품, 성능시험, 성형, 비파괴검사, 기계적시험 등 한하여 외주업소에서 수행하는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현황 제출

<외주업소 현황 작성 예시 >

순번	공정구분	업체명	업체담당자 e-mail	주소	공정명(부품명)	비 고*
1	주요부품*	AA. Ltd	AA@aa.com	1234 aaa ST	밸브몸통, 콕, 조정기, 버너, 노즐, 배기통 등	
2	성능시험	BB. Ltd	BB@bb.com	1234 bbb ST	내구성능, 내열성능, EMC 등	
3	성형 (주조, 단조)	CC Casting	CC@cast.com	1234 ccc ST	밸브몸통, 덮개, 버너 등	
4	비파괴시험	DD NDE Co	DD@dd.com	1234 ddd ST	RT. MT. PT. UT	
5	기계시험	EE Mechanical Testing	AA@aa.com	1234 eee ST	인장, 굽힘, 충격	
6	기타	-	BB@bb.com	-	-	

※ (1) 주요부품 : 가스용품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품

(2) 비고 : 해당되는 제품이 인증품(KS, CE) 또는 품질관리 인증 내용 기재

2. 제조 및 검사설비 현황

2.1 제조에 필요 설비 목록은 본 가이드의 [별표 1-2]에 따른 제조등록 제품종류별 KGS CODE의 2. 제조시설 기준을 참조하여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제조설비 작성 예시>

번호	설비구분	설비명	규 격	수량	비고
1	가공설비	구멍가공기	30Ton Max Φ500	1	
		프레스	100Ton	2	
		관굽힘기	MaxΦ500 30Ton	3	
		절삭기	30Ton	4	
		성형설비	CASTING/FORGING	1	외주업체이용
		기타			
2	표면처리 및 도장설비	표면처리실	2000*2000*3000mm	1	
		도장부스	2000*2000*3000mm	2	
		기타			
3	세척 설비	초음파 세척설비	1000*1000*500mm	1	외주업체 이용
		공압식 세척설비	1000*1000*500mm	2	
		수압식 세척설비	1000*1000*500mm	3	
		기타			
4	조립설비	용접기	SMAW / GTAW(TIG)	1	
		동력용 조립지그	-	2	
		조립작업대(라인)	-	2	
		에어드라이버,에어렌치	-	1	
		공기압축기	Max 1MPa	1	
		기타	-		
5	기타설비 및 기구				

<검사설비 작성 예시>

번호	설비구분	설비명	규격	수량	비고*
1	치수측정설비	버니어캘리퍼스	0~300mm	1	자체
		마이크로메타	0~50mm	2	
		나사게이지	M8* 1.25	3	
		핀게이지	1.10~1.70mm	4	
		기타			
2	재료시험설비	내가스성시험설비 (항온조, 정밀저울 등)	CH ₄ , C ₃ H ₈	1	
		내식성능시험설비 (염수분무시험설비)	500*500*1000mm	1	장비계약
		내열성능측정설비 (전기로)	500*500*500mm Max 2000°C	1	
		기타			
3	성능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공기압축기등 가압장치, 압력계)	Max 50MPa	1	
		기밀시험설비(공기압축기, 압력계, 가스누출검지기)	Max 30MPa(kPa)	1	
		가스소비량 측정설비 (압력계, 온도계, 가스미터기 등)	50kPa 0~500°C 5m ³ /h	1	
		표면온도측정설비 (표면온도계)	-30~500°C	1	
		연소가스성분측정설비 (CO 측정기)	0~10,000ppm	1	
		절연저항측정설비	0~2000V 0~ MΩ	1	
		내전압측정설비	0~2000V	1	
		누설전류	0~100mA	1	
		소비전력측정설비	0~100W	1	
		토크메타	0~300N·m	1	
		전자파적합성능	-	1	공인검사기관
		소화안전장치성능(타이머)	-	1	
		기타		1	
4	안전장치작동시험설비	역풍방지장치시험기	-	1	
		과열방지장치 시험기	0~300°C	1	
		기타			
5	내구시험설비	밸브내구성시험기	10~20회/min	1	
		내진동시험기	10~20회/min	1	
		기타			
6	시험가스공급설비	NG 공급설비	LNG SUPPLY LINE	1	
		LPG공급설비	LPG VESSEL	1	
7	그밖에 필요한 검사설비 및 기구	AAA			
		BBB			

* 각 공정별 설비명에 따른 자체 또는 공인검사기관, 장비대여(장비계약)로 구분하여 표기

3. 품질관리매뉴얼 및 절차서

3.1. 품질관리 매뉴얼은 (1)문서 및 기록관리 (Documented information) (2)제조자책임(Organization responsibilities) (3)인원 및 장비 관리(People, Monitoring and Measuring resources) (4)제품 요구사항(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s) (5)설계및개발(Design and development of products and services) (6)구매관리(Control of externally provided processes, products and services) (7) 생산관리 (Production and service provision) (8) 검사관리(provided inspection processes) (9)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 (10)개선 (Improvement)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3.2 3.1항에 따라 품질관리 절차서에서는 아래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1) 재료 관리(입고검사 등)
- (2) 용접
- (3) 성형(밸브몸통, 덮개 등)
- (4) 비파괴검사
- (5) 열처리
- (6) 압력시험
- (7) 측정기류의 교정
- (8)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표시사항(명판도면 등)
- (9) 제조 규격에서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 절차

4. 두께계산서 (배관용밸브만 적용)

5. 제품 사용설명서, Brochure(Catalog)

6. 제조사 대표가 서명한 기술검토 신청서

7. 대한민국 정부 제조등록증 (보유하고 있는 경우)

8. 그 밖에 기술검토에 필요한 서류

1. 일반현황

1.1. 제조사 일반현황 :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생산 제품 내역서, 회사소개 자료

1.2. 제조사 등록현황 : 제조 규격 및 품질시스템 관련 인증서 사본

1.3. 신청품목 현황 및 제조공정도

- (1) 본 가이드의 [별표 1-3]에 따른 제조등록 제품 종류
- (2) 제품 종류별 제조공정도

1.4. 부속품 공급업체 현황 : 완성된 제품의 부속품(압력용기,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등)을 공급 받은 업체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현황 제출

<공급업체 현황 작성 예시>

부속품 구분※	Design Pressure (Setting Pressure)	Internal Volume (Size)	Manufacturing Code	Manufacturer (address)	Registration No. (Korean Government)
압력용기	50MPa	40L (O.D 400*1m)	ASME Sec.VIII Div.2	AA PV. (211 aa st.)	ES-0000
안전밸브	65MPa	(45A)	PED+ISO 4126	DD Safety System. (111 st.)	ES-3333
긴급차단장치	40MPa 200℃	(45A)	KGS AA318	DD Safety System. (111 st.)	ES-35555

※ 본 가이드의 [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제조등록 제품을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MOTR)에 공장등록된 업체의 제품으로 해당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2. 제조 및 검사설비

2.1 제조에 필요 설비 목록은 본 가이드의 [별표 1-3]에 따른 제조등록 제품종류별 KGS CODE의

2. 제조시설 기준을 참조하여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제조설비 작성 예시>

번호	설비구분	설비명	규격(Spec.)	수량	비고*
(1)	구멍가공기, 프레스, 관굽힘기, 절곡기, 주물가공설비	Forming Press Pipe Cutting Machine	30Ton Max Ø500	3 2	
(2)	표면처리 및 도장설비	Shot Blasting Room Painting Room	5000*2000*7000 5000*2000*7000	1 1	
(3)	가스용접기 또는 전기용접기 및 동력용조립지그, 공구	Welding Machine(GTAW) Jig	550A -	5 20	
(4)	셀 및 스택 제작 설비	Stack	2000*1000*2000	2	외주업체 업체명:AAA
(5)	전기회로기판 회로인쇄, 부품삽입, 납땜 설비	Circuit	-	1 1	외주업체 업체명:BBB
(6)	그 밖에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Stamping Machine Crane	- 50Ton	1 3	

* 외주설비를 이용할 경우 외주업체의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검사설비 작성 예시>

번호	설비구분	설비명	규격(Spec.)	수량	비고
(1)	초음파두께측정기 나사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기타 측정기류	Ultrasonic Thickness Meter Plug & Ring Gauge Calipers Height Gauge Coating Thickness Gauge	0~50(0.01)mm M28 * 1.5등 0~300(0.01)mm 등 0~700(0.01)mm 0~1250(0.1)μm	4 다수 다수 1 1	
(2)	가스유량계	Gas Meter	0~50L(0.01L)	3	
(3)	내압시험설비	Hydrostatic Testing Machine	Max 50MPa	8	
(4)	기밀시험설비	Air-Tightness Testing Machine	Max 30MPa	8	
(5)	절연저항측정기 및 내전압시험기	Insulation Resistance Testing Voltage Meter	0~10MΩ(0.1) 0~5000(0.1)V	1 1	
(6)	전압 및 전류측정기	Clamp Meter	0~1000(0.1)V 0~400mA(0.1)	2	
(7)	안전장치 성능시험 설비 (KGS AH271 3.4.3.1관련)	Testing Machine	-	1	
(8)	표면온도 측정설비	Surface Temperature Meter	-30~1000(0.1)℃	5	
(9)	수소 및 산소농도 측정설비	Portable Gas Meter	(0.1ppm)	5	
(10)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3. 품질관리매뉴얼 및 절차서

3.1. 품질관리 매뉴얼은 (1)문서 및 기록관리(Documented information) (2)제조자책임(Organization responsibilities) (3)인원 및 장비 관리(People, Monitoring and Measuring resources) (4)제품 요구사항(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s) (5)설계및개발(Design and development of products and services) (6)구매관리(Control of externally provided processes, products and services) (7) 생산관리 (Production and service provision) (8) 검사관리(provided inspection processes) (9)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 (10)개선 (Improvement)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3.2 3.1항에 따라 품질관리 절차서에서는 아래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1) 재료 관리(입고검사 등)
- (2) 용접
- (3) 성형(밸브몸통, 덮개 등)
- (4) 비파괴검사
- (5) 열처리
- (6) 압력시험
- (7) 측정기류의 교정
- (8)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표시사항(명판도면 등)
- (9) 제조 규격에서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 절차

4. 공정설명도

5.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Drawing)

6. 제품 · 부품의 도면

본 가이드의 [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제조등록 제품을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속품 도면

7. 제조사 대표가 서명한 기술검토 신청서

8. 대한민국 정부 제조등록증 (보유하고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술검토에 필요한 서류

[용기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1.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해당 용기등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등 6. 특수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용기 7. 에어졸용 용기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8의2.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9.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 10. 그 밖에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가스용품] 액 화 석 유 가 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해당 가스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가스용품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7. 그 밖에 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1. 규칙 별표 3제9호에 따른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및 제10호에 따른 연소기(이하 이 조에서 "연소기등"이라 한다)로서 해당 연소기등을 수입하는 자가 연간 3대 이하로 수입하는 동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동일 형식의 연소기등.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서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국에서 사용하던 연소기등으로서 그 사용하던 자가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연소기등
[수소용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5.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6. 그 밖에 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용품

[용기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변경 등록]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용기등의 종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3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규격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의 변경
[가스용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변경 등록]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가스용품의 종류 변경 3. 가스용품의 제조규격 변경 [변경 신고]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수소용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변경 등록] 1. 사업소의 이전 2.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변경 신고]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위의 표에서 1. 사업소 위치변경 2. 등록제품 종류의 변경 3. 제조규격 변경 4.제조공정의 변경은 본 가이드의 3.2.2항에 따라 변경등록 심사 대상입니다.

구분	제품의 종류	주관 부서
설계단계검사 있음	용기	KGS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
	용기부속품	KGS 시험검사처 안전기기부 KGS 시험검사처 제품평가부(수소자동차용)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	KGS 시험검사처 안전기기부
	복합재료 압력용기	KGS 관할 지역 (수입후 제품검사 신청 지역)
	모든 등록대상 가스용품	KGS 시험검사처 안전기기부 KGS 시험검사처 연소기부
	모든 등록대상 수소용품	KGS 수소안전검사처
설계단계검사 없음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압력용기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외)	
	냉동용 특정설비	
	긴급차단장치	
	안전밸브	

주 의

본 가이드의 내용은 현재 적용되는 최신의 법/규격/지침등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KGS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Factory Auditing Department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Korea

TEL : (043)750-1600~9

FAX : (043)750-1938

www.kgs.or.kr